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3
----------	-------

발의연월일 : 2019. 5. 16.

발의자 : 정유섭 · 송희경 · 백승주  
김재원 · 김현아 · 정양석  
송언석 · 강효상 · 임이자  
황영철 · 박덕흠 · 유동수  
정인화 · 민경욱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선·해운업의 장기 침체로 조합원사는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조합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3호,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를 “출자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지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 중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 주선”을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가입)”을 “(가입·탈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탈퇴, 당연 탈퇴, 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를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제16조제3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비례대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대의원 선출과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회에서”를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4. 제22조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감사

제27조제1항 중 “회장·이사장”을 “회장·부회장·이사장”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를 “(회계의 구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합은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다른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  
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자·지원의 -----  
-----.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응  
자 주선에 관한 사무

3. ~ 7. (생 략)

② (생 략)

제12조(가입)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2.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6조(총회) ① · ② (생 략)

③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여와 조합원을 위한 신용  
사업-----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입·탈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탈퇴, 당연탈퇴, 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준조합원) ① -----  
-----  
-----  
-----  
-----.

1. -----  
-----·해운대리점업·선박대  
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

2. (현행과 같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총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  
-----.

원이 직접 선출한다.

<신 설>

④ · ⑤ (생 략)

제22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 ⑧ (생 략)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비례대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대의원 선출과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2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

⑤ -----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

<p>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p>	<p>-----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감사</u></p>	<p><u>4. 제22조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감사</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③ -----</p>
<p>-----</p>	<p>-----</p>
<p>----- <u>이사장 및</u></p>	<p>----- <u>제1항제1호</u></p>
<p><u>상무이사-----</u></p>	<p><u>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u></p>
<p>-----</p>	<p>-----</p>
<p>-----.</p>	<p>-----.</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이사회) ① -----</p>	<p>제27조(이사회) ① -----</p>
<p>----- <u>회장·</u></p>	<p>----- <u>회장·</u></p>
<p><u>이사장-----</u></p>	<p><u>부회장·이사장-----</u></p>
<p>-----.</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lt;신설&gt;</p>	<p>제3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p>
<p>-----</p>	<p>-----</p>
<p>-----.</p>	<p>-----.</p>
<p>-----.</p> </td	

	<p><u>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u> <u>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u></p>
--	---